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제19대 대통령 선거관련「역구내 선거운동행위」관리지침 시달

제19대 대통령 선거(2017.5.9)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행위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, 각 소(역)장은 (예비)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역사내 선거운동 행위 시 질서유지 및 이에 따른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선거운동 가능기간

○ 예비후보자 : 3.10(금) ~ 4.16(일)

○ 후보자 : 4.17(월) ~ 5.8(월)

나. 선거운동 가능구역 : 운임적용 지역 외 (개방통로, 대합실 등)

※ 공직선거법 변경(2017.2.8) "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 선거행위 금지장소에 해당되었던 역구내 중 역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"함으로써 예비후보자도 운임적용 지역외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음.

- 다. 가능한 선거운동 행위 : 명함 배부 및 인사 등 지지호소 행위
- **라. 불가능한 선거운동 행위** : 연설·대담, 확성기 사용행위 및 연달아 소리지는 행위 및 기타 사유재산권 및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
 - ※ 관련법령(또는 관련근거)
 - 연설·대담 금지: 공직선거법 제 80조(연설금지장소) 제2호
 - 확성기 사용행위 금지 : 동법 제79조(공개장소에서의연설·대담) 제4조 및 제91조 제1항
 - 연달아 소리지는 행위금지 : 동법 제105조(행렬등의금지)제1항 제3호
 - 사유재산권 및 관리권 침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·답변(2012.4월)

마. 기타사항

-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고객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 주지
- 주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(상호간 부딪힘 등 민원 최소화)
- 붙임 1.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(발췌) 1부.
 - 2.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및 답변사항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

수신자

화곡서비스지원사업소장, 광화문서비스지원사업소장, 군자서비스지원사업소장, 강동서비스지원사업소장, 성산서 비스지원사업소장, 동묘서비스지원사업소장, 석계서비스지원사업소장, 태릉서비스지원사업소장, 대공원서비스지 원사업소장, 이수서비스지원사업소장, 신대방서비스지원사업소장, 부천서비스지원사업소장, 잠실서비스지원사업 소장,모란서비스지원사업소장,5678콜센터장

과장 **추명신** 부장 **윤한승** 처장 03/29 **권기원**

협조자

시행 서비스지원처-1382 (2017.03.29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 전화 6311-2525 전송 / mschoo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